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01 | 2023.09.11 (2023.09.04~09.10)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1] 지난 호 세종로Law Focus(제20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지난 제200호를 맞이해 새롭게 세종Law Focus로 거듭난 이후 많은 구독자 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보내주신 의견들은 앞으로 세종Law Focus와 입법전략 자문그룹이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 큰 자양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9/4~9/10까지 발표된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는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확정 발표(기획재정부, 9/4))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9/5)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은 앞으로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사이버 정보시장에서 대한민국의 ‘튼튼한 사이버 안보’를 실현하고 글로벌 시장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으로 향후 연관산업들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 새로운 정보보호시장 선도 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중에는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재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공시시스템을 통해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를 조합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으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조합의 공시 결과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조합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열람할수 있도록 하며,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시결과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중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2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하여 국내총생산액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의한 기업 성장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을 위한 기술과 제품들이 현장에서 활용되는 과정에서 제도적 한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신현영의원 대표발의)**”, 근로현장에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으로는 현재 각 상임위별로 2023년 국감계획 일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산자위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9/13(수) 10:00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확정·발표 (기재부) 5
-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 발표 (과기부) 7
- 제2차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발전 기본계획('23~'27) 발표 (식약처) 9
- 금융약관 심사업무 실효성 제고 (금융위/금감원) 0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1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
-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3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4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16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1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의원 등 11인) 1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1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1인) 18
-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안(김영식의원 등 11인) 18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19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7인) 20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1인) 21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5인) 21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김성원의원 등 11인) 22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김한정의원 등 10인) 23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25

-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0인) 25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26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26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1인) .. 27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의원 등 11인)..... 28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2인) 29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4인) 29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5인) 30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등 12인) 3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5인) 31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32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33

[별첨1] 지난 호 뉴스레터(제20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확정·발표

2023-09-04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함. 이번 대책은 우리 수출이 보다 빠르게 반등하여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 총력 지원하고자 마련됨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기반(인프라) 지원을 신속히 추가 보강할 계획으로 수출기업 자금으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수출기업 수요가 많은 수출바우처와 해외전시회 지원 규모를 크게 늘릴 예정임.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더욱 강화할 예정임

특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대해 수주지원단 파견,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수출·수주를 적극 지원하며, 사우디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콜롬비아 녹색산업 수주팀 등을 현지에 파견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저신용국가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2,500억원 추가 조성함

이와 함께 내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할 계획임. 아울러, 세계(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에도 투자하는 케이(K)-콘텐츠 전략펀드를 1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는 한편,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공기업이 해외 진출시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도록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주요내용

- ◇ 품목·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개선 방안 추진 + 무역금융·마케팅·해외인증 등 수출 인프라 보강
- ◇ 경제단체·업종별 협회 등 건의를 토대로 수출 현장애로 해소 추진

수출 품목 다변화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 유턴기업 투자지원 확대(보조율: 29% 수준 → 최대 50%) ▶ 중소중견기업 기술 상용화 지원(신설기업당 50억원, 금리 1.33% 적용) 반도체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예타 면제 추진 ※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공공기관 예타 면제 첫번째 사례 이차전지 ▶ 산학융합인재 특성화 대학 신규 선정(3개교) ▶ 이차전지 특화단지 용수공급시설 구축 지원(포항)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총사업비의 5~30% 국고지원 가능 바이오 ▶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등 R&D 국제협력 추진 ▶ 액셀러레이터 플랫폼 신규 구축 → 年 10~15개 기업 맞춤형 지원 조선 ▶ 하반기 RG 발급 확대* + 무보 RG 특례보증 2천억원 신규 공급 * (삼성) 8월~최대 49억원 추가 공급, (중형조선사) 하반기 3.3억원 추가 공급 ▶ 제조사(조선사)도 친환경산업 인증 신청 허용(現 발주사선주만 신청 가능) 자동차 ▶ 컨테이너선으로 대체 이용시 위험물 검사수수료 할인 적용 확대	유망분야 수출동력 확충 ICT·디지털 ▶ ICT 융합품질 인증 확대 →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판로 확대 ▶ 브랜드-K 선정분야 확대(콘텐츠 등 → ICT/SW 서비스 추가) 화장품 ▶ K-뷰티 홍보관(23.4분기), 해외 화장품 판매소(24년) 확대·운영 콘텐츠 ▶ K-콘텐츠 전략펀드 1조원 규모 조성 추진(24~28, '24년 0.6조원) ▶ 대형 콘텐츠 제작지원용 신기술 인프라 구축(24년 250억원) 농수산식품 ▶ 농식품 전용 수출바우처 대폭 확대(23년 44 → 24년 328억원) ▶ 연말까지 딸기 등 주요 신선식품 물류비 지원 확대(최대 15 → 25%) 에너지 ▶ 전력공기업-국내 기자재 업체 해외동반 진출 인센티브 강화 ▶ 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 신규 조성(포항, 1.918억원, '24~'28) 녹색산업 ▶ 현지전담팀(전문가+기업) 구성 → 인니(9월), 콜롬비아(11월) 파견 ▶ 기업 1:1 맞춤형 수출 전략수립·지원 실시(9월~, 20건 이상)
	수출 지역 다변화	주력시장(미국·중국·아세안 중심) 정부간 협업 ▶ 한중경제장관회의 및 한중경제교류협의회 연내 개최 추진 ▶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 개발금융기관간 인프라 협력 확대 해외진출 지원 ▶ 공공기관 해외투자사업 예타 기간 단축(現 평균 5개월 소요) 현지 거점 구축 ▶ (현지 지원) 미국·內 반도체, 팹리스 협력센터 신설 ▶ 미국·일본·內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 신설 ▶ (물류센터) 미국(LA)·베트남(하노이)에 해외물류센터 추가 확보
인프라 보강	무역금융 ▶ 수출기업 자금 애로해소를 위해 민간·공공이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4조원* 무역·수출금융 공급 * 무역금융 잔액 158.6조원(23년 공급계획 364.5조원 중 집행잔액) + 민간합동 수출금융 22.8조원(공공 17.4조원 + 민간(은행 우대상품) 5.4조원) 마케팅 ▶ 해외전시회 지원 확대(기업당: 23년 12.6 → 24년 15.1백만원, 기업수: 23년 5,478 → 24년 5,646개사) + 선급금 지급률 10%p 상향 ▶ 수출실적이 없는 신기술 창업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유망 해외전시회 발굴·지원 ▶ K-브랜드 마케팅 지원 대상 확대: (現) 드라마, 예능 → (향) 뮤직비디오, 인플루언서 콘텐츠 추가 수출바우처 ▶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 확대(23년 1,441억원(3,473개사) → 24년 1,679억원(3,984개사)), 지원 항목(메뉴판)* 추가 * 유통물류 검사, 국내 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현지 사후관리 대행 서비스(A/S) ▶ 수출바우처 지원 신청 시기 분산(年 1회 → 2회 이상) +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지정방식 개편(사후정산 방식 추가 확대) 해외인증 ▶ 의약품 해외 자동승인제도 대상국 확대를 위한 MOU 추진(미국·캐나다·한국·미국 추가) ▶ 한-싱가포르간 제조관리기준(GMP) 평가 결과 상호인정협정 체결 추진 물류·통관 ▶ 중소기업이 설립하는 보세공장에 대해 허가기준 완화(10월) ▶ 부산항 수출 컨테이너 반입 가능 기한 확대 협의 지원(접안일 3~4일전 → 중소화주에 대해 5일전) + 부산항 신규터미널 준공(12월) ▶ 관세환급 절차 간소화(서류 간소화, 전산화 등) 및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서류 축소(500 → 350종, 9월) 인력확보 ▶ 연내 4만명 외국인 고용허가서(E-9) 발급 등 쿼터 추가 확대* + '24년 쿼터 지속 확대 * 비전문인력(E-9) 1만명 추가(4분기 쿼터 3만명→4만명), 숙련가능인력(E-7-4) 3만명 추가(23년 쿼터 5천명→3.5만명)	
	현장애로 해소	▶ 전국 순회를 통해 수출 애로를 현장밀착형으로 해소하는 '윈스톱 수출 119' 확대 운영(월 2회 이상 개최) ▶ 역권사용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해외 영업 지원, 수출기업에 대한 조달 인센티브 강화 등 수출기업 지원 및 현장애로 해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0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정보보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을 발표함

최근 글로벌 보안시장은 사이버위협 증가와 디지털화로 인한 보안영역의 확장, 각국의 보안규제 강화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26년까지 연평균 8.5% 지속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글로벌 정보보호 시장규모는 '23년 3,019억 달러(약 393.9조), '26년까지 연평균 8.5% 성장 전망(Markets&Markets, '22)

특히, 제로트러스트·통합보안 등 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계기로, 고성장 중인 글로벌 사이버 보안시장을 선점하려는 선도 기업들의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사이버전이 확대되면서, 세계 주요국은 자국의 정보보호산업 수준이 곧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에 따라 국제협력과 산업육성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른 과기정통부의 이번 전략은, 우리의 힘으로 '튼튼한 사이버 안보'를 실현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정보보호 산업육성이 중요하고, 사이버 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선점할 새롭고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비전	글로벌 정보보호산업 강국 도약		
목표	'27년까지 정보보호산업 세계 5위권 진입	'27년까지 정보보호산업 시장규모 30조원 달성	'27년까지 보안 유니콘 육성
추진 전략	① 보안패러다임 전환 주도권 확보 및 新시장 창출 ② 협업기반 조성을 통한 신흥시장 진출 강화 ③ 글로벌 공약을 위한 단단한 산업 생태계 확충 ④ 차세대 정보보호 기술 경쟁력 확보		

① 보안패러다임 전환 주도권 확보 및 新시장 창출

- 보안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새로운 보안체계 적용과 스마트공장, 스마트헬스케어, 로봇, 우주·항공 등 미래산업의 보안내재화를 통해 보안 新시장을 창출하고, 융합보안 및 물리보안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글로벌 보안시장 진출 확대 추진

② 협업 기반 조성을 통한 신흥시장 진출 강화

- 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통합보안 모델을 구현하고, 신흥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하여 글로벌 시장 내 우리기업의 경쟁력 확보 추진



③ 글로벌 공약을 위한 단단한 산업 생태계 확충

-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가속화를 위해 시설확충, 펀드조성, 인재양성 등 지속성장 환경 조성에 집중 투자



④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

- 미래 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전략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선도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에 주력

차세대 정보보호 기술 R&D 추진방향		
구분	주요내용 및 방향	주요 기술분야
미래도전 R&D	현재 국내 기술수준은 낮으나, 글로벌 시장 임팩트를 고려하여 미래 산업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도전적 분야	AI-클라우드 보안, 제로트러스트, 위협인텔리전스, XDR, 신산업-융합보안
기술산업선도 R&D	국내 기술수준이 높은 기술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술 주도권 및 수출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분야	양자내성암호,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안보 투자 R&D	해외시장 규모가 협소하고, 국내 기술수준도 낮으나 국가안보·국민안전과 연관된 핵심기술로 지속 투자가 필요한 분야	공격역지·선제면역·회복탄력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차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발전 기본계획(’23~’27)」
발표

2023-09-0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험·검사 품질관리체계 고도화 등을 위해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함

기본계획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험·검사 품질의 신뢰도 향상과 관련 산업 분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음

지난 1차 기본계획에서는 식품·의약품 분야 통합 시험·검사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세계가 신뢰하는 시험·검사로 국민안심 확보’를 비전으로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K-시험·검사 시스템 확립과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시험·검사 역량강화를 목표로 추진 전략을 마련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시험·검사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고 우리나라 식품·의약품 시험·검사의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험·검사 품질관리체계 고도화
- ② 시험·검사기관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시험·검사 판정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 등 의무화
- ③ 차세대 통합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을 구축하고 시험·검사 분야 국제협력 확대

금융위/금감원

금융약관 심사업무 실효성 제고

2023-09-07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그간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간담회를 개최함

※ 공정위 및 금융회사와 합동간담회·설명회 개최(’23.2월), 금융회사 불공정 약관 자체점검 실시(’23.3월) 등

한편, 공정위는 ’22년 제·개정된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분야 약관조항 1,391건* 중 129건**을 금융당국에 시정 요청함.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시정 요청받은 약관을 변경할 것을 은행들에게 권고할 계획임

* 은행 873건, 상호저축은행 518건, ** 은행 113건, 상호저축은행 16건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약관 신고시 금융회사가 공정위의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에 대해 자체 검증하는 절차 마련
 -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에 약관을 신고하기 전 과거의 주요 불공정 지적·변경사례를 조회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약관 신고체계 개선
- ② 공정위와 함께 금융회사의 자체 약관심사 역량 제고
 - 공정위와 공동으로 금융회사 내 약관심사(신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지적사례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금융연수원 등에 약관심사 관련 강좌 개설 추진

③ 불공정 약관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체점검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강화

- 해당연도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약관 유·무 및 시정 여부를 중점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사후검증절차 도입 추진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09-05 시행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추가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일반 누진세율 규정 등을 적용받으려는 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초로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 등을 제출한 이후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같은 서류를 반복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제3조제1항, 제3조제7항제8호, 제4조제1항제19호, 제4조제1항제22호~제24호 신설, 제4조의3제4항 신설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09-07 시행
----------	-------------------------------------	---------------

최초의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는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보고할 수 있으나 변경보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으로 제품생산을 시작하기 전에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변경보고도 제품생산을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용품이 수입 통관단계에서 기준·규격 등의 위반으로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종전에는 해당 위생용품의 반송 또는 폐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한편,

제조국·국외제조업소·재질 및 색상이 동일한 일회용 컵·숟가락·포크 등의 경우에는 품목이 다르더라도 최초 정밀검사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경우 서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생용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품목별로 실시해야 하나, 재질이 동일한 일회용 컵·숟가락·포크 등의 경우에는 품목이 다르더라도 자가품질검사를 재질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제1항 등)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3.09.05 ~09.11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공시시스템을 통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를 조합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으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조합의 공시 결과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조합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시결과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세액공제 대상 노동조합 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 (안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적정하게 공표한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를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으로 규정함
- ② 결산결과 공표 확인 및 통보의무 신설 (안 제80조제7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결산결과 공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조합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1항이 정하는 “공시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국세청장에게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명세서로 제출
- ③ 주요 변경 사항 (부칙 제1조)
 -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의 중요성·시급성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3년 10월 1일로 변경함

※ 문의처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mailto:기획재정부_소득세제과) (전화: 044-215-4211, 팩스: 044-215-803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09.04 ~10.16
---------	--	----------------------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확대 개편하고 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을 신설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도사업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활한 법·제도 운용을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법률상의 약칭과 동일하게 시행령 약칭을 수정 (안 제2조 등)
- ②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 안건과 관련 없는 위원 제외 (안 제7조)
- ③ 기술조정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을 삭제하고,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 및 첨단전략산업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조 제11조)
- ④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조항 정비 (안 제30조)
- ⑤ 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선정 절차와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8조의2 제38조의3)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mailto:산업통상자원부_산업정책과) (전화: 044-203-4215, 팩스: 044-203-4722)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09.08
~09.22

물류기업이 농수산물 및 식품, 의약품,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그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하여 운송 [이하 정온(定溫)물류]하기 위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382호, 2023. 4. 18. 공포, 10.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시·도지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폐업 사실 확인을 위해 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휴업·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 시 사업자등록번호의 명시를 통해서만 요청이 가능함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온물류 물류공동화 품목을 정함 (안 제17조의2)
- ② 시·도지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폐업 사실 확인을 위해 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휴업·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 시 사업자등록번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상호 및 주소 등 사업자를 알아볼 수 있는 다른 정보를 통해서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1조)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mailto:국토교통부_첨단물류과) (전화번호 044-201-4013, 4008, 팩스: 044-203-472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09.08
~10.23

비대면을 선호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와 조리기능을 갖춘 식품자동조리·판매기의 발전으로 무인카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영업범위에 조리 기능을 갖춘 자동판매기에서 조리된 식품의 판매를 포함하고, 업종의 명칭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으로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명칭 변경 및 영업범위 확대 (안 제21조제5호다목 신설, 제26조제9호, 제27조제5호 개정)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09.08
~10.23

현행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시설 및 준수사항은 커피 등 음료류에 한정되어 있어 자동 조리기능을 갖춘 다양한 자동판매기도 위생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판매기 내부의 구조, 재질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영업자가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마리나선박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조리·제공할 수 있도록 휴게음식점 등 영업신고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자가품질검사 의무대상 완화 (안 제31조의2, 안 별표 12 제6호가목2))
- 자가품질검사 면제기준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평가 결과가 만점의 90퍼센트이상으로 완화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을 자가품질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 ② 영업허가 제한을 확인하는 서류의 인정범위 확대 (안 제40조제3항)
- 영업허가관청이 영업허가 제한사유를 확인하는 위하여 제출하게 하는 서류의 인정범위에 아포스티유 (Aspotille)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를 포함하고자 함
- ③ 마리나선박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허용 (안 제42조제1항제17호)
- 마리나선박에서 선박을 이용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음식물을 조리·제공할 수 있도록 휴게음식점 등의 영업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규정하고자 함
- ④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 대상 확대 (안 별표 12 제6호가목2))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유가공품 중 치즈류를 소분·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⑤ 식품자동조리·판매기영업의 관리기준 강화 (안 별표 14 제5호나목3)라 및 같은 목3)마), 안 별표 17 제4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 식품자동조리·판매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내부는 세척, 관리 및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식품이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 재질로 되어야 하며, 조리에 사용하는 식품이 있는 경우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자 함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tel:043-719-2016)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2023-09-06 발의

현행법에선 유한회사에 대해 사원이 보유한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관을 통해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헌법 제27조의 재판받을 권리의 적용범위에는 판결절차 외에 집행절차도 포함됨. 이 중 강제집행절차는 권리의 강제적 실현, 즉 청구권의 사실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에 해당함. 또한 현행 헌법은 제23조를 통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

그러나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인정받았으며, 채무자가 유한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사례에서 유한회사 지분권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이 정한 금전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지분권양도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는 점을 이유로 채권자의 특별현금화 청구가 기각된 바가 있음

이는 정당한 상환의 권리를 인정받은 채권자가 유한회사의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의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짐

이에 유한회사 정관에 따라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하여도 채권자가 지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현행법의 양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경매·환가절차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강제집행 절차의 기본적 유효성을 확립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유한회사 지분 양도에 대해 사원의 지분권이 압류된 경우 지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안 제556조제2항 신설)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2023-09-05 발의

최근 범죄 예방 및 재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영상정보처리기의 영상 정보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소방청·경찰청 등 공공기관 간의 신속한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사유로 범죄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 범죄 사후 조치에 필요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어 범죄의 예방과 재발방지, 재난·재해의 예방과 대응 등의 이유로 영상정보처리기의 영상정보의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범죄의 예방과 재발 방지, 재난·재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명시하여 공공기관 간의 신속한 업무 협조를 통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18조)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1인)**

2023-09-06 발의

현행법에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규제로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내부거래의 주요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은 2009년에 도입되어 그동안 커진 경제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공시대상기업집단 수의 변화를 보면 2009년 48개에서 2022년 76개로 늘어 고정된 지정기준으로 인하여 대기업 규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중견기업이 대기업 진입을 미루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중견기업의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평가임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2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하여 국내총생산액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 성장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임 (안 제31조제1항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2023-09-07 발의

최근 탄소 중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행법상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연구·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 중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자금의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을 위해 이에 대한 최저한세액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현행법은 최저한세액에 관한 규정을 두어 조세특례에 의해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사용하자는 RE100이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UN 주도의 'CF100' 달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음. CF100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사용하자는 RE100과 달리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수소·CCS(탄소 포집·저장)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음

기존 재생에너지 투자뿐만 아니라 무탄소 에너지 활용을 통한 CF100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을 주고, 관련 사업을 지원해 탄소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인력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 최저한세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1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1인)

2023-09-07 발의

현행법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하여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40% 이상이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직전 과세연도에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비율이 100%인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국내 물류기업 상생협력 도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기업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40% 이상이지만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이용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화주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안 제104조의3제1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안(김영식의원 등 11인)

2023-09-05 발의

국가 첨단기술 역량 증대 및 선진국과의 글로벌 연대 형성을 위해서는 세계 최고 연구기관·연구자들과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 필요함

우리나라는 그간 추격형 과학기술시스템을 통한 성장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선도형 시스템으로 체질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바, 국제협력은 선도형 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한 핵심 요소임

이에 최근의 국제협력 중요성 대두와 국제공동연구 예산 증가 등 국제협력 기조에 맞추고, 더 나아가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동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국제협력 R&D의 경우 현행 국가 R&D 추진절차에 대한 특례를 두어 연구자의 국제협력 접근성·유인을 확대함 (안 제16조)
- ② 해외기관의 국내 R&D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관기관 자격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함(안 제17조)
- ③ 국제공동연구의 성과 귀속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본원칙 확립, 국제협약·지재권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원체계를 규정함 (안 제19조)
- ④ 해외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연구행정 부담 완화, 정주여건 개선 등 연구 내외에 걸친 제도·환경 개선을 규정하고 기협력센터, 기술별 협력센터(예: 퀀텀) 등 해외 거점·연구센터 설치, 사업범위, 자금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안 제12조 및 제14조)
- ⑤ 국내 연구자가 세계 최고 연구자와 팀으로서 협업하고 국제적 리더십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주도로 첨단기술 공동연구, 인적 교류가 가능한 다국적 연구 플랫폼 구축을 제시함 (안 제18조)
- ⑥ 투자확대를 위해 국제협력 사업 재원에 대한 지속적·안정적 확보의무 부여, R&D 예산 신청 시 국제협력 사업 우선반영 노력을 규정함 (안 제10조)
- ⑦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의 전략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절차를 정함 (안 제7조, 제8조 및 제9조)
- ⑧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기획, 연구자의 국제공동연구 지원 등 각 기능을 수행하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지원근거를 규정함 (안 제11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2023-09-04 발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 무역안보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고, 상업용 물품·기술이 군사용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바세나르체제 등 전통적인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한 전략물자 품목·기술이 아닌 경우에도 국제평화와 국가안보 등을 위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무역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현재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기능이 한정되어 있는 전략물자관리원이 여타 민감 물품과 기술의 통제를 담당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음

아울러 1992년 「대외무역법」에 전략물자 수출허가 규정을 신설한 이후 총 11차례의 일부 개정을 거치면서 법 구조의 체계성이 저하된 바, 법률 조항간 정합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국제사회 수출통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물자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하고, 이를 지원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원으로 개편하여 무역 및 기술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법 전반의 체계성과 정합

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3장제3절의 각 조문을 재배치하고 미비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국제평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기존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 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전략물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
- ②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원으로 변경함 (안 제25조)
- ③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허가심사기준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제를 법으로 격상 (안 제19조의6 및 제22조의2)
- ④ 조건부허가 발급에 따른 조건 미이행시 행정처분, 교육명령, 처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면제에 따른 입증서류 미제출시 교육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0조제1항제2호, 제49조제2호 및 제4호, 제53조제2항제3호, 제59조제2항제1호)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7인)

2023-09-04 발의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없는 중소기업 사업주나 노무를 제공하는 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도 본인을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은 보험료 때문에 사업주 본인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음. 반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재보험 임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또는 그 가족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산업재해 대비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7제2항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의원 등 11인)**

2023-09-05 발의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어,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로 하여금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을 허가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세계적으로 전략기술 등의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 정부가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사업장에 대하여 전략기술과 관련한 자료제출이나 현장조사를 요구하고 전략기술보유자가 이에 응할 경우, 우리나라의 중요한 전략기술이 외국 정부나 기업에 유출되어 우리나라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략기술보유자는 해외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자료의 제출이나 현장조사를 요구받아 이에 응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제7항 및 제50조제5항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5인)**

2023-09-05 발의

현행법은 5년 단위로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관련 계획의 보고 의무가 없어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과 지원 등 계획과 법률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전략기술의 유출 및 관리 부실 등이 발생할 경우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재로 유출과 관리 부실에 대한 국회 차원의 확인과 감시 등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해당 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을 보호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안 제45조의2 신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우수 인력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를 위하여 미국은 「칩스법(Chips Acts)」을 통해 반도체 인력확보에 나서는 등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경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임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은 증가하고 우수 해외인재의 유입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 인력 수급 미스매치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음. 한편, 첨단산업 특성상 대학 등 기존 교육체계만으로는 인재육성에 한계가 있어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산업계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함

이에 산업계가 주도하는 첨단인재 육성, 해외인재 유치, 인력 생태계 조성, 인재 양성 시스템 마련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정부의 역할을 촉진·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안 제1조)
- ② “첨단산업”이란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 정의 (안 제2조제1호)
- ③ “첨단산업인재”란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식·기술·역량 및 태도 등 능력과 품성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 (안 제2조제2호)
- ④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하여 사내대학원, 기업인재개발기관, 첨단산업아카데미 등을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⑤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문인재의 양성 또는 재교육을 목적으로 전문양성인을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등으로 임용할 경우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 ⑥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 ⑦ 첨단산업 관련 기업 및 개인 등은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 및 활용과 산업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 ⑧ 정부는 상생협력을 통한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상생협력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채용 절차, 자율규약 운영에 필요한 자원 출연 및 운영계획 등을 담은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을 정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 ⑨ 협회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

-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인재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첨단산업 인재 위기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
- ⑪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해외인재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하여 세제지원, 보육 및 정규교육 지원,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지원, 내국인에 준하는 수준의 금융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7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0인)

2023-09-08 발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23년 3월 제6차 기후변화 평가 종합 보고서를 통해 2040년 이전에 지구 평균 온도가 1.5°C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IPCC는 지구의 평균 온도 증가를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2100년까지 최대 1조 2,180억 톤의 탄소를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Storage)로 처리해야 한다고 분석함

* 이산화탄소를 배출단계에서 포집, 저장, 활용하는 친환경 기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은 CCUS 산업의 주도권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임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탄소포집장비 설치 등에 관한 세액공제 지원을 하고 있고, CCS(Carbon Capture, Storage)의 경우 탄소 1톤 당 85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함

EU도 2023년 3월 공개된 「탄소중립산업법」을 통해 CCS를 ‘전략적 Net Zero 기술’, CCUS를 ‘Net Zero 기술’로 규정하고 관련 산업을 EU 역내에 유치하기 위한 인허가 단축 등의 지원을 할 예정임. 그 밖에 호주는 2020년 「CCUS 통합법」을 제정해 배출권 수익을 보장하고 있고, 일본도 CCUS 실증사업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CCUS 관련 통합법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40여개의 개별법을 준용해야 하는 상황임. 또한 CCS는 산업통상자원부, CCU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는 등 부처 간 업무 영역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CCUS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노력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의 목적을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저장하거나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써 기후위기를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 (안 제1조)
- ② 포집·수송·저장·활용과 이산화탄소수송관 및 저장소 등을 정의함 (안 제2조)
- ③ 포집한 이산화탄소와 이를 활용하여 생산한 물질 또는 물건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포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소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른 청정수소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봄 (안 제4조)
- ④ 정부는 5년마다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 및 제6조)
- ⑤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안 제7조 및 제8조)
- ⑥ 수송관설치자는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⑦ 이산화탄소저장소를 발굴하기 위한 탐사의 승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선정 및 선정의 취소, 저장소의 폐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 ⑧ 저장사업자에 대한 허가기준, 결격사유와 사업 및 처분효과의 승계, 사업개시의 신고, 저장사업 허가의 취소와 사업의 정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을 규정함 (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 ⑨ 저장사업자는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모니터링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저장소 및 관계 시설 운영시 저장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집적화단지를 지정 및 지정해제할 수 있고, 집적화단지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 ⑪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특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의 근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실증사업의 실시와 특례, 조세의 감면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33조부터 제45조까지)
- ⑫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진흥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 (안 제46조)
- 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집등에 관한 공공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고, 저장소 모니터링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안 제47조 및 제48조)

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2023-09-06 발의

현행 법률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化粧品の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없어 새로운 제조기술 등으로 원료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등 지정·고시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 化粧품제조업자, 化粧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연구소 등이 금지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化粧품제조업자 등이 化粧品の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안 제8조제6항)

보건복지위원회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0인)

2023-09-07 발의

디지털 헬스케어란 지능정보기술과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평생건강관리, 연구개발 등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함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22년 17.3%를 기록함.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만성질환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 의료비에 대한 부담도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상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짐

이에 국민건강을 위한 기술과 제품들이 현장에서 활용되는 과정에서 제도적 한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더 나은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의 개념을 정립하고 보건의료데이터주체의 권리 및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함 (안 제6조)

- ③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가명처리의 적정성 및 가명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성 등을 위하여 기관 보건의료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 ④ 개인보건의료데이터주체는 본인에 대한 개인보건의료데이터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 및 개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대한 전송요구권을 도입함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⑤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하여 연구개발의 촉진, 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지원센터를 지정해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안 제23조부터 제33조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2023-09-07 발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촉발된 의약품 수급의 불안정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어 의약품 조제·투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치료시기 지연 등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관리에 심각한 위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 대응을 위한 의약품의 긴급 생산과 수입, 유통개선조치 등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관이 참여하여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유통개선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수급 불안정 의약품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국민 건강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68조의13부터 제68조의18까지, 제95조제1항제10호의4 및 제10호의5 신설)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2023-09-08 발의

선진국 진입,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대와 예방·관리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 변화로 일상적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생활 습관의 분석을 통한 식이·운동 등 올바른 건강정보의 제공은 개인의 일상적 건강관리는 물론 만성질환자의 건강 관리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21세기 치유법(21st Century Cures Act)」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 방식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료기기에서 명확하게 제외하고, 이와 의료기기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등 법적 체계를 마련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체계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으나 의료의 지원 또는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의료기기와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에 대한 자율 신고제도 도입과 유통관리 등을 통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체계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의료의 지원 또는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생체신호를 측정, 분석 등 하거나 생활 습관을 기반으로 건강관리 목적에 따라 식이·운동 등 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료·건강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의료기기와 명확하게 구분 (안 제2조)
- ② 의료·건강지원 소프트웨어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 제품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관리목록에 등재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가능 (안 제43조의7)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건강지원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품질,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유통 중인 의료·건강지원 소프트웨어를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3조의8)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1인)

2023-09-05 발의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의 원활한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사전에 고시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해당지역에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주민지원사업 추진 대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폐기물처리시설로 한정되어 있음.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해당지역 주민의 환경·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근거는 없는 실정임

또한 특정지역에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이 편중되면서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는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달리 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고 그 재원으로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폐기물처리업자’를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갖추어 사업장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자로 규정함 (안 제2조제3호 신설)
- ②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도록 함.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안 제26조의2 신설)
- ③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위탁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6조의3 신설)
- ④ 환경부장관은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통해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6조의4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의원영의원 등 11인)

2023-09-07 발의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유상·무상으로 할당하도록 하면서, 배출권 할당의 기준과 유상·무상 할당 배출권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이에 시행령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 제3기 계획기간 동안의 무상할당 배출권 비율을 90% 이내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EU가 2021년부터 무상할당 대상업종을 175개에서 50여 개로 축소하는 등 국제적으로 무상할당 비중을 줄이는 추세를 보이고, 국내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의 무상할당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에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을 50% 이내로 축소하도록 하여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안 제12조)

환경노동위원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의자의원 등 12인)**

2023-09-07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지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상황이 다른 중소기업은 복잡하고 상이한 법 내용에 따른 준비 부족, 만성적인 인력난 속에 안전 및 보건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비용 문제, 기업의 대표가 대부분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폐업 가능성 등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는 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임

상황이 이렇다 보니, 50인 미만 사업장 중 85.9%가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현장 여론이 알려진 바도 있음. 이럼에도, 영세하거나 소규모 사업장의 공감대가 부족하고 준비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현행법대로 시행될 경우 가뜩이나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영환경마저 열악하여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현장에서는 범법자 양산과 기업 도산 등으로 사회적 혼란은 물론 국가경쟁력 상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처벌을 위한 처벌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함

이에 근로현장에 더욱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을 연장하여 중대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고자 함 (안 부칙 제1조)

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4인)

2023-09-08 발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는 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차량 점검·정비 등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상당수가 장치 부착 후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고 있으며 성능 유지확인 받기도 보증기간(3년) 내에 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저공해조치 자동차 소유자에 성능유지 확인을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를 명하는 등 관련 사후관리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저공해조치의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이고자 함

그 외에 저공해엔진 반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잔존가치가 낮은 부품은 환경부장관이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이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보험가입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배출가스 검사에 따른 신청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동차 수시점검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운행차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 말소 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및 부품만을 반납하도록 함 (안 제58조제5항)
- ②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저공해조치 자동차 소유자에 성능유지 확인을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0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94조제4항제5호의2)
- ③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면제기간을 3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함 (안 제60조의2제4항 및 제5항)
- ④ 환경부장관이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보험가입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62조제9항 신설)
- ⑤ 저감장치 탈거 등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2조제10호의2 및 제11호의2)

환경노동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5인)

2023-09-08 발의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제품 내에 함유를 금지하는 물질 등을 지정하는 등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세정제, 제거제,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5종의 제품에 미세플라스틱 함유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면서도 세정제 등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영유아용, 목욕용 제품류 등)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관리되는 고품 세탁비누 등은 미세플라스틱 함유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는 목적 등의 사유로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등을 미세플라스틱 함유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는 별개로, 소비자에게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함유 여부를 알리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필요해 보임

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미세플라스틱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미세플라스틱의 함유량과 사용 목적 및 용도를 표시하도록 하고자 함 (안 제10조제8항)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등 12인)

2023-09-04 발의

현행법은 2019년 개정을 통해 종전에 종합 및 전문건설사업자가 각각 수급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엄격하게 구분하던 것을, 일정한 시공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상호 간의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음

그런데, 종합업체는 상대적으로 전문공사에 진출이 쉬운 편인 반면 전문업체는 종합공사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아 입찰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워 상호 건설공사 수주량에 불균형이 심화함에 따라, 종합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사에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제외)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체의 진출을 제한하여 전문공사업체의 시공기술 전문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보호함으로써, 종합업체와 전문업체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1항제4호)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5인)

2023-09-08 발의

현행법은 택시, 버스 등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연료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대상을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중 부탄, 천연가스(CNG) 및 수소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객자동차 중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도 있는바, 휘발유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에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 휘발유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추가하여 여객운송사업자간 보조금 지원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안 제50조제5항제3호 신설)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	9/11(월) 14:00	- 타위법 심사
	법안심사1소위	9/12(화) 10:00	- 고유법 심사
	전체회의	9/13(수) 10:00	-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필요 시) - 현안질의, 고유법 의결(소위 의결 시), 타위법 심사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9/13(수)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9/15(금) 10:00	- 법안 의결
과방위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심사소위	9/12(화) 10:00	- 법안 심사
	안전조정위	9/13(수) 10:00	- 법안 심사
농해수위	전체회의	9/15(금) 14:00	- 법안 상정 및 심사, 현안질의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9/13(수) 10:00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방문규 인사청문회
환노위	전체회의	9/13(수) 13:00	- 법안 상정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9/12(화) 10:00	- 법안 심사
	국토법안심사소위	9/13(수) 10:00	- 법안 심사
예결위	결산심사소위	9/11(월) 10:00	- 2022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발간 등)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9/11(월) 10:30	가맹지사 피해사례 발표 및 법 개정 촉구 간담회	민병덕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실
	9/11(월) 14:00	통신요금 국제비교 토론회 -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 바로알기	김영식 의원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의원회관 7간담회실
	9/12(화) 07:30	제7차 국회 모빌리티 포럼 - 모빌리티 유니버설 디자인을 입다	국회 모빌리티 포럼	의원회관 3세미나실
	9/12(화) 10:00	국내기업의 글로벌 100대 기업 도약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 글로벌 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모색	글로벌기업경쟁력강화 더불어민주당의원모임	의원회관 3세미나실
	9/12(화) 10:00	핀테크 혁신 더하기 토크증권 플러스(+)	윤창현 의원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
	9/12(화) 10:00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홍석준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실
	9/12(화) 14:00	소방배관 시스템 부식문제 해결 촉구 국회 세미나	이명수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9/12(화) 14:00	해양에너지 분야 미래 발전 전략 세미나	소병훈·안호영·윤준병· 윤미향·이달곤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9/12(화) 14:00	해외자원개발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정운천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9/13(수) 10:00	수상레저안전 국회포럼 - 수상레저 안전과 산업 활성화	정점식·안병길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9/13(수) 10:00	제4회 건설엔지니어링 정책포럼 - 건설엔지니어링의 현재와 미래 생존 전략	엄태영 의원실,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
	9/13(수) 10:00	미디어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 과 방안 모색	박성중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9/13(수) 14:00	세계적 기초과학 연구기지 한국중성미자관측소 건립 포럼	홍석준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9/14(목) 09:30	특허침해소송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이주환·김정호· 이수진(동작을)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실

	9/14(목) 14:00	방산 클러스터의 해외 사례와 국내 발전방안	구자근 의원실, 방위사업청, 산업연구원	의원회관 1소회의실
	9/14(목) 15:00	기후대응기금 이행점검과 활성화 방안	국회기후변화포럼, 한국환경경제학회 등	의원회관 9간담회실
	9/15(금) 10:00	국내 첨단산업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첨단산업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김성원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9/15(금) 14:00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	최재형·신현영 의원실 등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자료집 등	9/14(목) 14:00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강원) - 실현 가능한 국민공감 개헌, 개헌절차법	국회사무처	강원도청 대회의실
	9/15(금) 14:00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충청) - 실현 가능한 국민공감 개헌, 개헌절차법	국회사무처	세종시 대회의실
	9/13(수)	금주의 서평 제645호 발간 - 도서명 : 가족을 폐지하라 - 저자 : 소피 루이스	국회도서관	
	9/14(목)	현안, 외국에선? 제66호 발간 - 프랑스의 지방 중소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심 활성화사업	국회도서관	
	9/14(목) 10:00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Ⅲ) 보고서 설명회 개최	예산정책처	의원회관 1소회의실
	9/15(금)	2023 대한민국 지방재정 보고서 발간	예산정책처	의원회관 3세미나실
	9/13(수) 14:00	지방소멸시대 지역 중심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경상북 도교육청 토론회 개최	입법조사처	더케이호텔 경주
	9/14(목) 10:00	국회미래연구원 의회외교 전략 세미나 개최 - 세계질서 전환기, 한국 의회외교 전략	미래연구원	의원회관 3간담회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1] 지난 호 뉴스레터(제200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9/4(월) 10:00	바람직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 - 파행적 지방 사립의대 운영 이대로 괜찮은가?	고영인·도종환·서동용 ·이상헌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9/4(월) 10:00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 공청회	박범계·박병석·박영순 ·이상민 의원실 등	한밭대학교 국제교류관
	9/4(월) 10:00	친환경 냉매 전환을 통한 콜드체인산업 온실가스 감축 정책토론회	양이원영·이수진(비) 의원실, 기후변화센터 등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9/5(화) 09:00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	정우택·이만희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9/5(화) 10:00	방위산업 육성과 발전방안을 위한 연속토론회 1 - 방산 수출산업화 정책도입의 필요성 및 지원방안	구자근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9/5(화) 14:00	기후위기 시대, 기상청이 나아갈 방향은?	김형동·노웅래·박정· 우원식 의원실 등	의원회관 7간담회실
	9/5(화) 15:00	국방과학기술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립	신원식·김병주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의원회관 3세미나실
	9/6(수) 09:3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 치과기공 관련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정춘숙·최연숙·강은미 ·이수진(비)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9/6(수) 10:00	K-브랜드 위조상품 전시회·세미나	김한정 의원실, 특허청	의원회관 3세미나실
	9/6(수) 10:00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II)	김희곤 의원실, ICT법경제연구소	의원회관 2소회의실
	9/6(수) 14:00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에너지 위기 극복 전략	송언석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9/7(목) 14:00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장제원·홍석준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9/5(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30호 발간 -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독일 입법례	국회도서관	
	9/6(수)	금주의 서평 제644호 발간 - 도서명 : 과학의 반쪽사 - 저자 : 제임스 포스켓	국회도서관	
	9/7(목) 10:00	제7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개최 - 국가전략과 종합국력	국회도서관 박수영 의원(국)	국가전략 정보센터
	9/6(수)	NABO Focus 제61호 - 기초연금 제도 및 수급자 특성 변화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9/6(수)	NARS 브리프 제19호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경상북도 지역토론회	국회입법조사처	
	9/6(수)	NARS 현장실태조사 - 나노팹센터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9/5(화) 14:00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77호 - 트리플 트랜지션(Triple Transition) :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그리고 국제질서 전환	국회미래연구원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백운일 | 전문위원

[이메일주소](#)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